

제400회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9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4)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2)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0)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8)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5)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
1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6)
1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0)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4)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3)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9)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4)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9)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1)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8)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5)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3)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7)
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2)
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1)
2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8)
3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4)
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0)
3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8)
3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4)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2)
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9)
3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9)
3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9)
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3)

상정된 안건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 3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3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4) 3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3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2) 3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0) 3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8) 3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5) 3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 3
1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 3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 3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 ... 3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6) ... 3
1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 ... 3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0) 3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4) 3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3) 3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9) 3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4) 3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9) 3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1) 3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8) 3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5) 3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3) 3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7) 3
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 3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2) 4
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61) 4
2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8) 4
3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4) 4
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0) 4
3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8) 4
3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4) 4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4

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2)	4
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9)	4
3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9)	4
3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9)	4
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	4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	4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3)	4

(09시35분 개의)

○소위원장 이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문체부 1차관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3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하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14)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2)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0)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8)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865)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
1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6)
1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0)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4)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3)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9)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4)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9)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1)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8)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5)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3)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7)
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8)
-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852)
- 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361)
- 2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8)
- 3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4)
- 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0)
- 3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8)
- 3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4)
- 3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 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2)
- 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9)
- 3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9)
- 3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9)
- 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0)
-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
-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3)

(09시36분)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 변경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한행위 허가에 관한 조례 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괄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이렇게 목적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일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이 제한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는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는 관련 사업 그다음에 4페이지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겠습니다. 5페이지 수정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6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도보존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가 있었고 그 심사 요지는 이러한 개정안에는 동의하나 수립 시 지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페이지 보시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있어서는 지정지구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취지는 아마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벗어난 조례를 정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할 사항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게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는 관련 조문이 되겠고, 여기

까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같이 정부는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수용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수정 의견은 수용하시고, 11쪽 정부 의견 신중검토 이 부분은 어떻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저도 여기 수정 의견, 정부안 또 검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단서 조항 같은 경우에도 수정 의견대로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단서 삭제는 하지 말고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행위제한의 주체 이런…… 문화재청 소관 법안들 보면 거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밑에 자치구가 없는 그런 경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특별자치도로 바뀔단 말이지요. 그 밑에는 시군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 주체를 그렇게 시군이 있는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법령상의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다른 의견 있으시면……

○황보승희 위원 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 관련 해 가지고 기존에는 시장, 군수가 하고 그다음 시·도지사를 거쳐서 문화재청장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사실 이것상의 문제가 맞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은 청에서, 다른 입법례에서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고도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기본 방향이라든지 전략적인 개념의 기본계획이 아니고 시행계획에 가까운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해당 고도 지역에서도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황보승희 위원 그런 요구가 있다면 중앙의 어떤 방침과 세부 시행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협의하는 방향도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뜩이나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권한이 너무 세다라고 지방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계획 세우는 것을 아예 그냥 중앙에다 다 준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 고민은 되거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저희 문화재청장이 수립권자가 되지만 시·도지사라든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방과 의논하도록 한다는 것도 달아야 되고 세부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이 어느 정도 계획을 역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세부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저는 이런 조항을 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세부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문화재청장은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라든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부분.

○**김윤덕 위원**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들은 청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한가에 동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장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행정체계상 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화재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또 행정과의 갈등 이런 현상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넣어서 안정성을 갖추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수립권자를 기초지자체…… 의견 청취 조항은 이미 있고요. 다만 부여라든지 공주, 익산, 특히 백제의 역사유적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하나의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이렇게 지역별로 하게 되면 기본계획의 정합성이라든지 전략적 관점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될 부분이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권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님, 8페이지에 보시면 그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8페이지에 의견 청취 조항이 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번에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의 규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김윤덕 위원** 예?

○**김승수 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요.

○**김윤덕 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8페이지 보시면 현행 규정에 ‘제9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김윤덕 위원** 예, 봤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의견 없으면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용호** 아, 그러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앞으로 문화재청은 시행령이나 다른 대통령령 이런 데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제정법이라 내용이 많은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제정안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두 의원안이 발의됐는데요. 이상헌 의원님만은 공청회와 지난번 법안심사소위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상헌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물 등을 자연유산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묶어 제정법을 하는 내용이고, 배현진 의원안은 다른 제정법률이 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춰 자연유산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청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최근 추세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되었고, 2페이지 보시면 이런 제정법은 좋은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소관 부처와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새로운 규제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자연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립자연유산원을 토대로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연유산 조사 그다음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하도록 하고 질병관리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44조에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52조 아랫 부분에 보면 전통조경을 따로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정안에 따라 문화재 분류체계를…… 이상헌 의원안 기준입니다. 현행 기념물을 문화재의 종류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정 후에는 자연유산을 크게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따로 자연유산으로 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6페이지는 두 의원안의 체계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 보면 이 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신설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 천연기념물에 있어서 질병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입니다라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맨 아래쪽 4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등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이라든지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개동굴의 관람환경조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따라서 검토 의견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보면 동·식물, 지

질·명승 자원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와의 업무 중복 이런 우려를 관계부처에서 제기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구성 체계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을 추가한다든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목적 조항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정의,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조에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 의견으로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의 보호)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제한 행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조는 질병 관리를 식물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정 의견에서는 동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질병 예방 의무 시행주체를 관리단체에서 소유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조, 32조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44조 국립자연유산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와 연구·전시를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산원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서 기존의 한국문화재단이나 국립문화연구원 등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기존 단체와의 비교 자료는 51페이지에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므로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게 굉장히 복잡한, 첨예한 법안이어서 우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환경부 입장이 지금 뭔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 보세요.

○김윤덕 위원 환경부 와 있어요?

○소위원장 이용호 환경부는 와 있나요?
안 와 있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환경부가 아니고 문화재청?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환경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환경부와 네 차례의 공문 서신을 주고받았고 과장급 협의, 국장급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뒤에 행정실장이 자료를 드릴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위원님들 자료 5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밑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환경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문화재청 소관으로 자연유산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미 96년, 2005년, 2014년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에서 이 논의를 세 번 지속을 해서 각기 지정 목적이 다르므로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국가보호종이라는 타이틀로 4개의 기관이, 저희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해수부와 산림청도 같이 걸립니다. 4개의 기관이 국가보호종협의회를 구성해서 연 2회 회의를 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라고 했고 지금까지 총 15차례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연유산법안에서는 이런 과거 조정 내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계속 업무 중복을 얘기하니까 배현진 의원안에서 자연유산 정의 조항에서 환경부 소관 야생생물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 의견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은 환경부 소관의 기관과 관리대상이나 관리업무가 전혀 다른 기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시행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업무를 저희가 가져오거나 침해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의견 있으신 분……

○이병훈 위원 문화재청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조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제 환경부가 와서 ‘중복 여부가 있다’ 의원실을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오늘 와서 의견 제시를 안 하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중복이 되는지를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제출 못 했습니다.

○유정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지정 목적이 달라서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던데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부처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환경부가?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환경부가 해수부하고도 37건이 중복됩니다.

○유정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의견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지정 목적이 다르고 중복으로 볼 수 없고, 하나 있다면 중복종의 동물은 50건, 식물 1건 이건 뭔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저희가 천연기념물 지정제도를 62년도에 도입했고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지정제도를 98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먼저 지정을 했었고 환경부가 중복을 해 온 겁니다.

○유정주 위원 먼저 중복이 발생했을 뿐 모두 중복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연간 2회 국가보호종협의회를 통해서 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그렇습니다. 연 2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 이상헌 의원님께서 제출하고 나서 공청회를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작년 4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법이 보류가 된 이유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그때 보류시킬 때 좀 더 협의를 해 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렇지요. 그 이후에 협의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그 뒤에도 배현진 위원안을 발의하면서 저희가 계속 서면의견을 했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니까 당연히 문화재청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정부의 전체 입장을 보면 이게 서로 중복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면 이것도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개념 가지고 지금 상당히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 중복되는 여지도 감안해서 정의 조항에서 야생 동·식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게 1996년, 2005년, 2014년 총리실하고 국무회의,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도 했지요? 논의한 결과 지정 목적이 달라서 중복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독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맞습니다. 지금 근거 공문도 가져왔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중복 소지에 대해서 서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호종협의회를 연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걸러 가면서 이 법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정 후에 향후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업무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예를 들어 드리면 반달가슴곰은 넓은 지역이 필요해서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하기로 했고요. 황새와 따오기는 조류보호협회가 저희 청 소관입니다.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해외 같은 경우에도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 동물과 식물이 다 포함이 됩니까? 다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포함됩니다. 이번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때로서·남해안 갯벌에 있는 생물종들이 매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환경부가 여기 나와 있어야 정확히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문화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재청의 얘기가 맞고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거기가 맞아서 이런 충돌이……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아니요. 위원님, 이게 14년도에 환경부가……

○소위원장 이용호 2014년도는 옛날 얘기잖아요. 공청회를 작년에 해서 그 이후에 충분히 의견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서면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공청회 이후에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경부 얘기는 한마디로 이게 지역별(area)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템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윤덕 위원 환경부를 부를까요?

○유정주 위원 환경부는 나오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저희가…… 방마다 찾아 다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이용호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 저기를……

행정실, 환경부에서 나와 있나요? 환경부 있으면 불러서 좀 들어 보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도 웬만하면 오늘 정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하면서 기관별로 서로의 주관이라고 그럴까, 주무부처로서의 뭔가 영역을 좀 확대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다른 데는 다른 데대로 또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충돌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정실, 혹시 연락을 해서 환경부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상현 위원 환경부 할 말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요.

○유정주 위원 안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굳이……

○소위원장 이용호 아니, 여기 안 나오는 게 아

나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승수 위원** 일단 그동안 우리 문체위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출석을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 합의하면 참석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참석을 그동안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했을 경우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조직 신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또 위원회 이런 것들은 행안부하고 이견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참석시켜서 논의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이견이 많았던 부분이 환경부와 그런 업무영역 정의 중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논의가 공청회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고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안을 새로 내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정리한 상태로 사실은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뚜렷한 이유 제시 없이 반대를 계속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오늘 환경부 와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 보고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면 밖에 아마 환경부 담당 과장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처의 입장을 우리가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참여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이견 없이 조정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러면 환경부 과장을 불러서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환경부 과장 나오셨어요? 우선 소속 직위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작년에 공청회를 했을 당시에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자연유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도록 하는 논의가 그때 좀 덜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끌어 왔던 것 같아요.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예.

○**소위원장 이용호**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은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안에서 몇 가지를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서 정리했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하여튼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하시기에 전혀 조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소위에서 공개적으로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늘 불렀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서로 조정이 있었는지요?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일단 공청회는 작년에 있었던 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법안소위 3월 달에 논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통과가 안 되고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심사가 보류됐을 이후에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맞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문화재청과 저희가 올 3월 소위 이후에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렇지만 3월 이후에 배현진 의원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이후에 배현진 의원안이 나왔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래서 배현진 의원안은 환경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일 큰 쟁점은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 부분이지요, 2조?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예.

○**소위원장 이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뭘니까, 배현진 안에 대한?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일단 자연유산의 정의에 보면 동·식물,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등 여러 개를 정의의 범위(scope)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정의에는 동·식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식물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환

정부 야생생물법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현진 의원님 법안에서는 멸종위기종을 제외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외 다른 야생동식물도 환경부가 이미 관리체계를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 문화재청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오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처 간 상호 합의하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 협의·조율을 하고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정의를 이미 두고 있고요. 생태경관보존지역이라는 것을 국가, 시도에서 이미 지정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지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을 두고 있고 그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승인 그리고 세계유네스코에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등재를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 사무국 역할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는 문화재청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지만 자연유산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에 환경부가 하고 있는 영역과 포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의견 들었고 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예, 저희가 자연유산……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면 환경부에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물어봐도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예.

○소위원장 이용호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이 법안을 문화재청의 의지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문화재청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법안을 내놓은 것은 의원들이에요.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요.

공청회 이후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이상헌 의원안의 당초 정의보다 배

현진 의원안은 그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제외한다, 이건 상당히 환경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정의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이 뭔지를 밝혀줘 봐요, 범주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일단 자연유산의 정의에서 천연기념물이 들어가는 건 저희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다만 그 이외의 동·식물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훈 위원 동·식물만 삭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그리고 자연경관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훈 위원 자연경관하고 동·식물만 삭제하면 이의가 없는데 2개가 중복된다 그거지요?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예. 그리고 다 조항의 지형·지질·생물학적 생성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과 관련된 부분의 문구 조정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훈 위원 지질 부분은 문구 조정이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용호 문화재청 보존국장, 지금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서……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현진 의원안이 발의가 되고, 발의가 되면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합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이 안 왔습니다.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고 의견 제시를 저희한테 보내온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정의 조항에서 일부를 제외했으니 이견이 없는가 보다고 간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으로 동물, 식물, 지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하면서 동물 쪽에 지정을 해 왔던 것이 야생동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돗개, 동경이, 삼살개, 오골계, 제주마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 업무를 해 왔다는 것이고……

식물 쪽은 저희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이품송,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이번에 드라마에 나왔던 우영우의 팽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동·식물이 그렇게 보인다고 다 빼 버리면 62년부터 해 왔던 저희 업무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질 쪽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천연동굴—제주도에 있는 것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것, 경상북도에 있는 동굴—부터 화석, 발자국, 공룡 발자국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있는 우항리 공룡 발자국도 천연기념물입니다.

환경부 업무가 어떻게 하나면 저희가 지질 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면 그 이후에 환경부가 들어가서 지질공원으로 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해 오는, 그렇게 해서 계속 중복시켜 나가는 그런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쪽의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한국의 갯벌 등재할 때 저희 주요 관심 포인트는 갯벌이 생성되는 지형학적 지질 쪽을 중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받고 유네스코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생물종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동물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유산의 기준에, 자연유산에 동물·식물이 빠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오늘 양 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부의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내서 조정을, 입장을 원했는데 전혀 답변을 안 했던 것이고,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문화재청은 그냥 다 수용으로 간주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조정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책임은 그에 응하지 않은 환경부가 크지만 그러나 아직 조정이 안 된 것은 여전히 사실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무슨 공청회 하듯이 양쪽 기관을 듣고 토론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양쪽에서 조정을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적극성을 갖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하여튼 의견

을 좀 주십시오.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국립자연유산원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의를 보면서 양측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법 이전에 양측에서 얘기하는 관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이후에는 이런 유사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향후에도.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환경부에서는 자연유산 범위에 동·식물을 빼라, 자연경관을 빼라, 생태경관을 빼라 또 지질은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문화재청 얘기를 들어보면 겹치는 부분은 있으나 그 부분 중에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에 대해서는 상호 이미 경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실 거면 다른 법이라든지 업무 영역에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연 2차례 만나서 논의를 하고 계시고 그 상호의 경계라는 것은 이미 나뉘어져 있는데 굳이 이 법을 만들면서 그냥 일반적인 동·식물, 지질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재청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의혹을 갖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 나눌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 환경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4년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요구 또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극한데 기존에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변화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가방에 두고 와서 지금 정확한 위당은 읽을 수 없지만 제 기억……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제 기억하는 바로는 문화재보호법 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호관리를 별도 분리해서 자연유산법을 제정하여 자연유산 보존·활용 제도의 체계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이미 봤고요. 다만 여기에서 자연유산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별도 분리해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 동·식물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연기념물도 지정을 해서 계속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기념물만 넣어도 앞으로 문화재청이 하고자 하는…… 특수한, 역사적,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할 수 있는 역할을 천연기념물의 정의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식물의 정의를 넣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그것을 삭제해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됐어요.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용호**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 지금 여기 양 부처가 서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걸 생각해 주세요. 법안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우리가 법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쟁점을 해소하려는 여러분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처 간에 아직 이런 문제가 협의를 하자고 해도 협의 안 해놓고 이제 법안소위에 올려 놓으니까 환경부가 와 가지고 또 의원실 돌아다니고 이걸 대단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상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번만 더 기회를 줘서 우선 양측이 조정을 해 보고 다음 번 법안심사할 때 이 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그 사이에 양측이 얘기를 해 보고 안 되면 법안소위에서 결정을 할 테니까 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이용호** 예, 하여튼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문화재청, 뭐 할 말 있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지금 자연유산법에 올라와 있는 관리 대상들은 저희가 이번 법을 준비하면서 추가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지정 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온 겁니다. 단 한 자도 고치지 않았습시다. 그런 상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것을 옮겨 왔는데 옮겨 오면 환경부와 중복이 되고 현재 문화재법은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가늠해 주시고요.

이 중복 얘기가 어떻게 해서 처음 출발이 됐느냐 하면 98년도에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저희 천연기념물·명승 업무를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가져가려는 것을 저희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업무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맥락도 그것과 똑같이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아까 이병훈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정주 위원** 그런데 업무 중복, 한 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 중복을 얘기는 하지만 지정 목적과 목표는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것을 갖고 간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환경부보다는 문화재청이 먼저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이미 1962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존을 했는데 그 중간인 98년도에 환경부가 멸종위기를 제정하면서 중복이라는 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유정주 위원** 이게 밥그릇 싸움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고 먼저 말을 하더라도 환경부가 아니라 사실 문화재청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용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윤덕 위원**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부처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점이 어쨌든 있으니 부처끼리 조정해서 다음까지 하자 이렇게 한테 더 나아가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 중 한 분을 조정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 위원이 두 분 모아 놓고 조정해서 안을 다음에 올려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용호** 좋은 말씀입니다.

○**유정주 위원** 그런데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문화재청 입장에서.

○**김윤덕 위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상헌 위원님이……

○**유정주 위원** 제가 문체위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해 갖고 넘어가 버렸고 이번에 다시 하고 있는데 진짜 중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위원장 이용호** 제가 하반기에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 법안에 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도 서로 이견이 있고 또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그렇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해소가 되면 통과시킬 법안이 아닌 상태여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문화재청으로 봐서는 그렇고.

사실 예전에 물 관리가 처음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잖아요. 환경부로 넘어가 있는데, 똑같은 일인데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기관 자체가 넘어가고 사람도 넘어갔어요.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천연기념물, 명승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이 기능 자체를 통째로, 사람까지 포함해서 넘겨야 될지 몰라요. 자칫하면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고 하자니 같은 일이 중복,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크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의하신 이상헌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 발의한 지가 벌써 2년 반이 됐어요.

○**유정주 위원** 제가 환경부에 한 번만 질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용호** 예.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정주 위원** 해수부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왜 유독 문화재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뭔가 차이가 있나요?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해수부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유독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정주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해수부와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그것은 누가 전달을…… 제가 그 전달하신 분의 취지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이런 일이 아예 없습니까?

이거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해수부 해양보호종과 환경부의 멸종위기종이 37건이 중복됩니다.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협의회를 만들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수부 산하에 별도로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부가 반대 안 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이상헌 위원**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헌 위원** 환경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투리가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공사장에서 여기 흙을 갖다가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 거리는 한 200m 된다. 거리가 200m가 되겠지요. 그런데 흙을 실어 가지고, 원칙으로 보면 흙 덮개를 덮어 가지고, 맞지요? 덮어 가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그런데 못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신고를 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면 딱 숨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흙을 옮길 적에 왜 덮개를 안 덮고 타이어를 안 닦고 옮겼느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환경부는 그 업자에게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벌써 발의한 지가 2년 반이 됐고 권한과 규제를,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협의를 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환경부가 권한을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 안 뺏기려고 하고 말이야. 이걸 내내 내버려 두고 오늘 가서 이 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연기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2년 반이나 지났는데 왜 또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공청회도 했고.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제가 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이상헌 위원** 답변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권한만 하려고 말이야, 환경부에서.

○**이병훈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잘 협의해서……

○**이상현 위원** 협의하면 또……

2년 만 됐어, 2년 만.

○**김윤덕 위원** 오늘 하자, 오늘 해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지요, 오늘 하자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하자는 말입니다. 결론이 안 나서 되겠는가, 내 줘야지.

○**소위원장 이용호**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환경부과장, 어떻게 말을 그만 식으로 해요, 여기 와서? 동물 된다, 동물 안 된다, 식물 안 된다, 국회까지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태도를 봤을 때 관계부처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된 그런 태도예요.

지금 천연기념물 1호가 됩니까?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에 있는 도동 측백나무 아니에요? 나무예요, 식물이에요. 이미 지금 천연기념물 지정된 것 중에서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런데 아까 문화재청 국장 하는 얘기대로 동물 안 된다, 식물 안 된다 그러면 기존의 천연기념물도 다 환경부로 가져가야지.

지금 문화재청 이야기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자연유산으로 용어만 바꾼 거예요.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영역·범위 중에 어떤 것이 문화재청으로 갈 것인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면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는 기존에 환경부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논의가 되고 조정이 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협의가 진행이 1년 동안 안 된 것 아니에요, 부처 간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뜯어 보면 기존에 시도에서도 사실은 보호지역 같은 것을 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맞춰 가지고, 당장 천연기념물·명승으로서의 지정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유사한 가

치가 있거나 지정될 또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 차원에서 좀 연계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물론 환경부에서도 관광자원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쪽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를 논의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도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크게 보면 문화재청으로 넘어갈 것도 없어요. 그렇게 좀 검토를…… 당장 의결하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조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국립자연유산원법 자체의 자연유산 정의가 지금 문화재청 국장님 말씀 들으면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거든요. 다만 자연유산이라고 새로운 용어로 기존의 문화재법을 고치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가 다시 논란을 시작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이 정의와 별도로 세부적으로 업무영역은 벌써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이 정의 아래에 또는 시행령으로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업무영역을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지금 동·식물을 빼라, 생태·지질은 빼라 이렇게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나 우리 국가의 문화재법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 자연유산으로 한다고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서는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연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말씀해 주세요.

○**이개호 위원** 문화재청하고 환경부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각각 지정하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이개호 위원** 중복된 것도 있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하나면 각 부처별로 지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이개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나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세 번 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때 논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지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처 각각 하고 대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 2회 업무 조정을 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정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지정한 내용이 중복될 수 없다고 국무회의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물론 부처 간에 협의를 하도록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길게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나름대로 지정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조속히 우리 소위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환경부에서 부처 간 협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환경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한 거지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위원님 물음을 주셔서 저희가 뼈아픈 실수를 자백을 해야 될 것……

○**이개호 위원** 실수입니까?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예.

○**이개호 위원** 예, 그러면 그걸로 됐어요. 실수니까 앞으로라도 협의할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조속히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위원장님, 저는 우리 소위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

요.

○**이병훈 위원** 오늘 법안소위에 올라온 안건이 41건이거든요. 이거 하나로 날 새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환경부과장은 나가시고 우리 위원들 간에 빨리 합의를 봐서 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빨리 결론을 내리고 가십시오.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면 환경부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소영** 잘 헤아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용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 가지고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환경부가 서로 조금 입장 차이가 있고 위원님들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 최대한 오늘 우리가 성과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양 기관이 합의하도록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 이후에 또, 지금 이 조항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진척시켜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게 가능하지……

○**이상헌 위원** 이거 2년 반이나 됐는데 해도 내내 그거라, 결론 지읍시다.

○**유정주 위원** 목적이 다르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판단할 때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이 사안을 가지고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처 간에 어쨌든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리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리를 해야 된다면 저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앞서 소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한 번 더, 계속 이견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똑같은 논쟁이 될 테니까 그 전에 그래도 한 번만 더 납득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크게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정의 부분만 조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인데 결국은 이것도 기존에 환경부의 생물자원관 이런 것들과 중복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문제인데 정의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최종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든 안 되든 다음 소위에서는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그런데 이거 2년 반은 됐는데 시간을 내내 줬다고. 여기서 결론 지읍시다. 빨리 짓고 진도 나가야지.

○**소위원장 이용호**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상헌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2년 반이 걸렸는데 1개월만 더 쓰면 어떨까 싶어서 다음번……

○**이상헌 위원** 그게 또 1년 된다니까요.

○**유정주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처리해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병훈 위원** 아니, 그것만 전제된다면……

○**황보승희 위원** 법안 정의 못 고칩니다.

○**이병훈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고……

○**소위원장 이용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기관간의 입장은 알겠고요.

○**유정주 위원** 그리고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을 갖고 있다라는……

○**소위원장 이용호** 문화재청의 우선 처리 법안이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회 입법권을 갖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게 또 부처 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최대한 한번, 다음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1월 정도까지는 조정을 해서 바로 다…… 왜냐하면 12월 달에도 또 소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월 정도나 늦어도 2월 이전에는 이 부분을 해서 다음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이병훈 위원** 위원장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년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2월에 한 번 더 있으면 그때 이걸 최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상헌 위원** 지금 해 버리면 되는 것을 뭐 또 1년 하려고 그래요?

○**이병훈 위원** 아니, 지금 양당 간사가 계시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통과하는 게 좋겠는데……

○**이상헌 위원** 그러면 되지요. 통과시키지요.

○**소위원장 이용호** 이 정도면 하여튼 충분히 공감대 이룬 것만 해도 성과가 있고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 최대한……

○**김윤덕 위원** 12월에 하세요.

○**이병훈 위원** 12월 달에, 금년 넘기지 말고.

○**김승수 위원** 그것은 양 간사한테 맡겨 주시면……

○**소위원장 이용호**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은 처리하도록 한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만약에 올해 넘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병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넘기도록 약속을 해야지요.

○**이상헌 위원** 약속을 한 뒤로 2년 반 지났는데.

○**이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합시다, 그냥.

○**황보승희 위원** 지금 합시다.

○**이상헌 위원** 지금 합시다. 결정해 버리고 가면 되겠구면 뭘 질질 끌어요?

○**소위원장 이용호**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상헌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양쪽 부처를 불러다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환경부는 의지가 없어요, 시간만 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약속을, 저희 소위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다음 법안소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상헌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혼자 하지 마시고 오면 물어봅시다, 오늘 하시겠는지 안 하시겠는지.

○**김윤덕 위원** 이상헌 위원님, 12월 안에 하도록 간사를 하면서 확실히 해 볼 테니까요.

○**이병훈 위원** 내년에 가면 안 돼요. 금년에 끝내야 돼요.

○**김윤덕 위원** 2년 반 기다리셨으니까 딱 3주만, 안에 결판내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제가 볼 때 정의는 협의해 가지고 고칠 게 없어요. 이대로 가고 세부 시행령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유정주 위원** 너무 소모적이에요.

○**이개호 위원** 다른 법에도 더더군다나 이대로 되어 있다는데 무슨 이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봐야 돼요,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유정주 위원** 그리고 아까 대답을 안 했지만 해수부 건은 가만히 있으면서 왜 문화재청만 가지고 이릅니까? 그것도 꽤 씹하지요.

○**황보승희 위원** 법안 심사하기 하루 전날 돌아다니고, 진작에 다녔어야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헌 위원** 의지가 없어요, 별로.

○**황보승희 위원** 그걸 왜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환경부한테 되게 기분 나빠요.

○**이개호 위원** 아니, 다른 법에 이와 똑같은 규정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과도한 개입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

○**유정주 위원** 아까 해수부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태도도 봐줄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이견 없이 정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간사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최대한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올해 안에 합니까?

○**소위원장 이용호** 법안소위가 열려야지 되니까.

○**이상헌 위원** 올해 안에 합니까?

○**소위원장 이용호** 지금 아마 임시국회가 열려서 올해 내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병훈 위원** 12월 내로 하자고요.

○**소위원장 이용호**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올해 안으로.

○**유정주 위원** 나도 2년 반 됐는데 공청회도 안 열리고 있는데……

○**소위원장 이용호** 제가 낸 법안도 지금 2년 반, 3년 된 법안도 처리 안 하는 법안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충분히 알겠어요.

이상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지금 논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올해 안으로 하는 조건으로, 최고 먼저 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병훈 위원** 올해 안으로.

○**김윤덕 위원** 올해 안으로.

○**소위원장 이용호**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좀 더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국장님, 여기 51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명칭의 한 부분인데 굳이 이것만 따로 중앙으로 빼서 할 이유가 있는지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예, 이유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다음에 검토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그게 여름철에……

○**김승수 위원** 다음에, 다음에요.

○**이병훈 위원** 위원장님, 저쪽 주장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완전히 다음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실로 자료를 주세요.

○**소위원장 이용호** 이 부분에서 필요하면 양당 위원님 한 분씩 지정을 해서 기관들을 불러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도……

○**이개호 위원** 책임을 누가 주어 줘서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이용호**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양쪽의 위원님들을 지정하거나 혹은 제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4항은 2권에 있는데요. 이게 자연유산 보존법 제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자료 1권으로 돌아와서 16페이지 5~7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문화재 업무 담당 전문인력의 의무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안이 발의됐는데요. 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지자체에 문화재 전담관 지정·운영 및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예지 의원안은 전담부서 설치 노력까지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안은 배치 인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상현 의원안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할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8페이지를 보시면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과 위에서 설명드린 문화재 업무 담당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역량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의 위치에 관해서 법체계에 맞게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문화재 담당 인력을 통계자료로 제시를 했고, 그다음 21페이지는 문화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는 지자체별 문화재 전담부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다른 입법례를 제시를 하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수정 의견을 25페이지에 여러 의원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정부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문화재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명시할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다 동의를 하는데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갖다가 쓰면서 전문인력이라고 다 호도를 할 수가 있고 이

러다 보면 나중에 지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다 동의를 하고 이것만 수정해서 학예연구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정주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병훈 위원 이상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윤덕 위원 학예연구직이요?

○이병훈 위원 예.

○유정주 위원 학예인력이든 학예연구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인력과 학예인력’ 이렇게. 그걸 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전문인력이 학예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현황에도 보셨지만 시설직도 있고 고건축 하신 분들, 그래서 ‘등’자가 들어가면 나름대로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서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적시를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걸 시행령에다 명시할 수 있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게 하고 자격기준 같은 것을 시행령에 담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그러면 동의하고요.

○소위원장 이용호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검토 의견에도 일부 나왔는데 문화재 전문인력의 배치 등 수정 의견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전문인력 배치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치단체 마음대로 지금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인력을 증원하거나 이럴 경우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앙의 승인이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가를 완전히 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전문인력 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에도 동시에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적정 인원을 관리하고 있

는데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김승수 위원** 문화재청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의견 조율이나 양해가 안 되면 증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 의무를 부과해서 어떻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라든지 조직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요인이 있어서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어쨌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추가로 예산 주면서 채용해라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기존의 티오를 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 문화재의 수량 또 그 지역의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게 얼마 이상이 있으면 몇 명 이상을 채용한다 이 기준도 시행령에 같이 답습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배치 기준은 시행령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그러면 얼마 이하가 안 될 경우에는 채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답습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지금 편차가,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많은 데는 500여 건 가까이 이르고요. 또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배치 기준은 저희들이 대령에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예.

○**소위원장 이용호** 추가로 말씀하실 분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뒤에 계속 문화재보호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예,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수리, 주거환경 개선,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고.

그다음에 현행 보조금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대상에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검토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 수립 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완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시행일에 있어서, 정부 측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행 준비에 6개월은 부족하므로 1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시면 현행 문화재 지정 내 보조금·세제지원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33페이지는 관련 조문이고요.

34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구역과 역사환경 보존지역 면적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는 주민지원사업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는 주민지원사업의 유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는 수정 의견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견을 보시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구를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계획 수립’으로, ‘반영’을 ‘청취’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38페이지는 시행 시기를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정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같이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제가……

○소위원장 이용호 9번 넘어가기 전에, 류호정 위원님.

○류호정 위원 ‘청취’로 수정을 하셨는데 청취보다는 그래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걸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청취는 반영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기도 하고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취지에 맞을 것 같거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사실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병훈 위원 아니, 그건 의무화가 아니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지. 같은 말이에요. 청취보다는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지 계속 조항은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런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취’를 뺄 게 아니고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예.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수용합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면 그다음 9항.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제9항 39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민법에 의한 설립 법인인데요.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으로 설립하고 연구원은 이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하고 연구원의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교육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보시면 연구원에는 정부안으로 정하는 임직원을 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두고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은 40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재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검토사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기존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연구원은 지금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고, 수탁받은 문화재 정책에 관한 연구사업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3페이지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일반현황이고, 44페이지는 관련 조문, 4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국립문화재연구원과 한국문화재재단과의 기능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46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서 수정 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정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정책연구원의 법인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민법상 재단법인입니다.

○이병훈 위원 민법상 재단법인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입니다.

○이병훈 위원 소속기관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거기도 공공기관, 법정 법인입니다.

○이병훈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법인이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정책을 연구하는 데는 재단법인이고, 문화재를 보존·복원하는 데는 소속기관이고, 재단은 법정 법인이에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저희들 입장에서 체계상 나름대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법정법인을 추구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건상 지금까지 미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훈 위원 오히려 정책을 연구하는 데가 법정 법인이 되고 나머지를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라고 안 보는데, 앞뒤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해서 이걸 다루는 건데, 지금 현재도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한 6억 5000 금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정부 측 의견 중에 통일부는 수정 수용했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통일을 대비한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시를 구체화시켜 줘라.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정책으로 한정해서.

○이병훈 위원 정책으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이병훈 위원 그건 정책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 문화재정책국장님, 기재부가 반대를 하는데, 물론 기재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한다거나 법인격을 부여할 때는 언제나 반대를 해요. 그러나 기재부의 그런 반대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잘 개발을 해서 기재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예, 통과시켜 주시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위원님, 추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룰 법안이 있는데요. 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설립을 당초에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는 문화재정책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 고려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지원센터 이 부분은 문화재청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지요, 중복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 의견을 수용해서 이런 부분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역할을……

○소위원장 이용호 그 대신 이걸 해 달라?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기재부 이견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문화재연구원하고 기능상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정책연구기관을 뒤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나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기재부는 그러니까 우리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정책연구원이 하는 걸 하라는 건데요. 그것은 각 부처마다 정책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 법인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속기관하고는 성격

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속기관은 공무원 중심이고요. 정책 연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민간적인 자율성을 갖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법정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문화재 정책 연구할 수 있는 법정 법인 형태로 기존에 이미 재단법인으로 있는 것을 법정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정부 소속기관하고 또 정부 산하 기관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서도 일반 민간 기관하고 구별되는 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는데 정부 산하기관이라 해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그렇기는 하지만 소속기관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자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도 하고요, 거기서 직접 복원·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의 거시적인 정책을 다루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대상으로 직접 하는 문화재연구원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부처의, 예를 들어서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정책기관으로 있고요. 또 각종 KDI라든지 각 부처마다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법정 법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법정 법인은 한국문화재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는? 그래서 지금 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통합·조정 그런 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인으로 법령상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기존에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통합이라든지 기능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보승희 위원**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동의를 하고 싶지만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산하기관들이 법적으로 소속기관이나 법정 법인이나 그것에 따라서 이게 다른 부처에는 법정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이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법정 법인화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은 설득의 근

거로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하고 있는 일이 소속 기관이든 법정 법인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걸 또 지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유사한 기관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국문화재단에서도 정책연구 기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법정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으로? 거기의 정책 기능과 이걸 추가로 법정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추후에 좀 더 설명을 듣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재단 쪽에서 출자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성격이 지금 저희가 문화재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그런 지적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주셨고 거기다가 또 그게 법정 법인이 아니니까 소속된 사람들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이직률도 높고 연구하고 있는 인원들,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 주자 이런 뜻에서 추진하는 거지 이게 새롭게 없는 기관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소위원장 이용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훈 위원** 처음에 설명을 잘못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참 논리가 부족한 거야. 없는 기관을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있는 기관에다가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첫째고요.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이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국립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수익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수익사업을 하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한국인의 집 같은 것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예.

○**이병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수익사업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문화재연구원은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책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할 때는 지금까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어서 김승수 위원님 아까 말씀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원래 있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바뀌면 신분상의 확실한 보장 이외에 예산상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법정 법인이 아니라서 예산상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으로 계속해서 편법적으로 그 인원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맡길 때 항상 이게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김윤덕 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기재부 의견은 한국문화재단에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법정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연구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지원 근거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적 보장이 취약하니 그걸 제대로 진행해보자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재단에서 해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 여기에서 해야만 하는 게 좋고 문체부도 그런 연구원이 있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단체를 전환시켜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현 정부에서 조직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취지와 대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기능을 진행하는 데에 따른 법적 보장을 해 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비

가지고 편법 써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문제 삼으면 문제 삼아져서 시끄럽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이렇게 바로잡아 버리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두 분은 찬성하시고 두 분은 조금 신중하게……

○**황보승희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산하에 연구 기능을 하는 곳을 법정 법인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도 여기는 주로 정책을 연구하는 거고 같은 재단인 한국문화재단도 역시 정책 연구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 연구 기능을 전문적으로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서 두 기관 중에 하나를 법정 법인으로 하는 통폐합 과정도, 업무 조정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기관을 더 법정 법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이용호**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저는 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설립 초기부터 나름대로 관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경과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일단 문화재정책연구원은 그 기능 자체가 국립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한국문화재단하고는 다릅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의 보급·선양 이런 데 중점이 맞춰져 있고 또 매장문화재조사·발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정책연구원은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지역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재생이라든지 이런 장기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력 구조상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시다라는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이것은 또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기존에 있는 한국정책연구원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아까 황보승희 위원이 말씀

하신 유사 기능을 통합해서 제대로 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안정성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왜 거기가, 발언권 주지도 않았는데……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차장님 말씀하세요.
앞으세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지금 그렇게 정책 기능 같은 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 유형별, 고고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공예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조사 또 보존과학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원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법정법인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오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웬만하면 이병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라 다 찬성을……

○이병훈 위원 잠깐만요, 아직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가기관의 재단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수익사업을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도 박물관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은 수익사업을, 예를 들면 매장문화재 발굴사업도 위탁을 해서 수익사업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완전히 나눠져 있다. 그리고 재단은 성격을 전혀 달리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성격은 못 된다 그런 결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이병훈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또 필요가 있어서 이병훈 위원님이 다른 법안을 대표발의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보세요. 국립문화재연구원, 정책연구원, 연구원이네요. 사실은 소속기관이 있으면 문화재청 입장에서 국립기관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까지 확대해서 하시겠다, 충분히……

이 연구원은 특정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자꾸 기관 만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야 되고 유지비가 늘어야 되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국립연구원 안에 그런 정책 기능을 제대로 할 기관을 두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흡수하십시오.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렇게 되면 공무원 증원을 해야 됩니다, 시립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그래서 공무원 조직으로서 경직성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황보승희 위원 그래서 재단으로 하셨었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재단으로 추진을 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에서 담당하기에는 기능 자체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발의한 안인데 동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출범해 가지고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방만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굉장히 역할은 중요한데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더 보장을 시켜줄 테고 기존에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들은 통합 조정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좀 신중하게 상황 추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것부터 가지고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전체 내에서 법이 논의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단계나 그런 게 아니고 새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말씀하십시오.

○이병훈 위원 아파, 존경을 하지를 말든가 통과를 시키든가, 같은 문체위원들끼리 좀 심하십니다.

(웃음소리)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용어 자체를 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연구원 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건도 많은데 이놈 갖고 계속 끝까지 가 버리면 다음 것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양보해서 보류하고, 이 부분은 논리를 보강해서, 명칭이 좀 그래서 그런데 기능은 확실히 차별이 돼요. 그런데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정책연구원, 연구원 하다 보니까 합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논리를 좀 더 보강해서 우선은 오늘 보류하고 넘어가십시다.

○소위원장 이용호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논의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의결하는 겁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덕 위원 저기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이 이것 저한테 별도로 자세히 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원일 예.

○소위원장 이용호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및 제9항, 이상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더 설명을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유산지구 지정·변경 간주 규정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보시면 간주 규정으로 현행 규정을 보시면 세계유산지구를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간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완충구역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는 55페이지 표에서 보면 세계유산지구로 신설되는 경우 규제 구역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간주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구역으로 간주되고요.

그다음에 ‘㉠’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세계유산지구와 불일치할 때는 문화재 구역으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구역이었던 게 세계유산지구에서 역사환경 보존지역으로 간주를 하면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 그림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51페이지의 이 개정안의 내용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세계유산 완충구역이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유산지구에 따른 규제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는데 이 개정안은 완화되는 문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57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인데요. 일괄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 사항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 그다음에 평가 실시 그다음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보완·조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영향평 실시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가지고 국제적 모범 사례로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영향평가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는 영향평가제도 개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 번째 사항인데요.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 이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은 평가 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 보완 사항으로는, 66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형사벌 처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은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를 법정 기관화했으나 아까 차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하여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는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준비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해 달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하도 난해하게 설명을 하셔서 가지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이 단서 조항을 수정으로 이렇게 넣은 이유가 일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겁니까? 그것조차도 좀 헛갈려요, 하도 헛갈리게 설명을 해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세계유산지구 지정 법이 202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 97년부터 저희들이 세계유산을 지정해 왔는데 지금 그 얘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게 법 정합성이라든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단서 조항을 줌으로써 조금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계유산지구로 인해서 기존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제1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결격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결격사유 중에 네 번째 보시면 건축사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걸 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정부는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비용 지원에 관한 것으로, 현행은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오경 의원안은 현지보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배현진 의원안은 매장문화재를 현지보존하거나 이전보존하는 경우에도 국가·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는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현지보존 등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8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검토할 사항으로 매장문화재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 이하는 관련 조문과 관련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정부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제가 판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가 확실하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국가사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사무에 대한 분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처인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가사무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사무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용호 예, 말씀하세요.

○문화재청발굴제도과장 김동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어서 지금 보존조치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조치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도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이전복원이라든지 현지보존에 따른 예산 사업비도 지자체의 부담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사료가 됩니다.

26조 1항에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을 못 할 경우에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지금 국가라 하면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면 문화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당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발굴 허가만 내주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게 규제 수용도를 올리는 데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한데 결국 그동안에는 이게 사업자가 부담해 온 내용들 아니에요, 비용 자체를?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그런데 이걸 정부가 떠안아서 한다는 게 간단한 비용은 아닐 것 같은데, 기재부나 이런 쪽은 논의를 해 보셨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나름대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용 또는 보존조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적 보호 차원에서 유적공원으로 조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유형별로. 보존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복토만 하는 경우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간단하게 잔디만 식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돈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전시관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그것보다는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게 막상 입법이 되고 나면 상당한 여파를 줄 수 있는 법안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지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지원이 안 되면 공사하거나 사업하는 데 또 지장을 주고 이게 공기가 늦어지면 또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여파를 줄 수 있는 법안 같은데 아무튼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위원장님,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지보존하고 이전보존 통계

를 보니까 총계가 6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복토하는 것 또 잔디 식재하는 것 또 안내판을 간단히 설치하는 것, 유적공원, 전시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조치를 해도 그렇게 큰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봐서 이전이나 현장보존이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면 문화재청이 즉각 그것을 해주냐 이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돈이 없다 이렇게 가면 이것도 참 업자로 봐서는 도와주기는 도와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늦어져서…… 사실은 재정 투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원 범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령에서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다른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의견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검토가 되고 있나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지금 대령에서 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발굴제도과장 김동대 담당 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건축물 신축·개축 비용은 제외를 하고요. 보통 현지보존할 때 매장문화재의 기본적인 땅을 덮어서 복토하거나 잔디 식재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들 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을 할 예정이고요. 정부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 비용추계가 나왔나요, 그러면?

○문화재청발굴제도과장 김동대 저희들이 건수는 있는데 비용추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시다만 기본적으로 샘플을 찾아봤더니 최소한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한 수억 원 정도까지는 소요가 됩

니다. 그런데 수십억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편차가 좀 많이 있어서 기본적인 소요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는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 건당 한 억대 정도로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나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사업시행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보존 조치를 이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매장문화재를 제대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대통령령에 들어갈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지자체의 부담에 대한 이개호 위원님의 걱정도 계셨는데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자체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보완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사업자나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토지 매입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토지 매입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국가와 지자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사실은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 부담을 이렇게 명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나 폭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게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일정한 정도의 말하자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자체에 부

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것 동의합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게 옳고요.

한번 물꼬가 터지면 건잡을 수 없이 독이 무너지듯이 지자체의 부담을 키우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개호 위원** 예.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국가 소유 국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관리 단체가 지금 지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100% 지원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정비 예산만 7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행 보조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분담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올리 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도.

○**이개호 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과 규모를 정확히 어딘가에는 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대령에서 이런 범위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상당히 신중한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볼 것이냐 이 문제 같아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나요?

○**김윤덕 위원** 이걸 보류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물고 들어가는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단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유정주 위원** 특히 매장문화재가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국가 귀속 결정……

○**유정주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지자체도 같이

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쪼개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원래 우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라든지 발굴허가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발굴은 원인자부담 원칙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하게 매장문화재를 훼손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까지 떠안는 것은 규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까지는 지원하는 게 지금 현행 규제 순응도를 올리는 데는 그게 맞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정확히 동의가 돼요.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산 세울 때 이 사업의 필요성 할 때는 큰 돈이 안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큰 돈 안 들면 깔끔하게 국가에서 하면 되지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정교하게 다듬거나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 위임해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92페이지입니다.

현행 역사문화권으로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권 등. 93페이지 보면 개정안은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은 후백제 지역의 유물·유적 보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개정안이 발의 후 시일이 경과하여 시행일이 지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정부는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번에 다른 문화권 넣을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역사문화권 지정하는 이유가 뭐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문화권, 역사유적을 통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해서 지역 나름대로 활성화, 지역 활성화도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 보존과 지역 활성화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문화권 지정된 경우하고 지정 안된 경우하고 특별하게 더 지원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몇 개까지 문화권 나눠서 지정할 겁니까, 앞으로?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런 부분들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8개 문화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사문화권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유적의 상태, 가치 이런 것들을 규명해 가면서 또 수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그때그때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아주 그냥 체계가 없이 가는 게 맞느냐 그거예요.

저번에 마한역사문화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쪽에 진한·변한 역사문화권 왜 지정 안 합니까? 이번에 여기 후백제 하면 또 후고구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고구려역사문화권 지정 안 합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고구려 문화권은 이미……

○김승수 위원 아니, 고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후고구려요?

○김승수 위원 예.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후고구려는 철원 이쪽으로 하는데,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역사문화권 기초조사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마한역사문화권이 지정됐으면 당연히 진한·변한 같이 들어가지……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유적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가치를 규명하고 이게 역사문화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사후 전문가들 또……

○김승수 위원 그걸 떠나서 의원 발의로 하나씩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실제 역사문화권을 지정해서 어떤 식으로 지정 효과를 최대한 시켜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중심을 잡고 법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입법으로 완전히 새로 문화권을 재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중복되어 가지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 그거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위원님 지적에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이것 하는 걸 보면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저희들도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용호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역사문화권을 확정하는 데는 기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예를 들어 시대적 범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역적 범위도 공간적으로 획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역사문화권은 전부 상고사, 그러니까 고대국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를 보면 우리가 고대로, 상고사로 획정을 하잖아요.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

후백제를 방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한다면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니까 저는 정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태봉국이나 그 후로 고려나 조선도 들어가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의들이 역사문화권 설정을 할 때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변한 같은 경우는 가야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한 같은 경우는 또 신라사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개호 위원 그러면 마한도 백제사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그러니까 원삼국시대라고 흔히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계속 말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시대 구분이든 공간 구분이든 간에 명확히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이전까지 한달지 또는 공간적 범위를 강역이 전국화 되지 않는 지역들, 그렇잖아요? 마한도 마찬가지로 여기 후백제도 마찬가지로 태봉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한달지 등등의 명확한 무슨 개념이 정립이 정확히 되어서 역사문화권 하면 그건 뭐다, 어느 시대다 이게 명확하게 등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역사문화권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런 범위라든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지정을 하시되 차제에 그러한 부분을 클리어를 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직무대리 안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김승수 위원님하고 이개호 위원님의 지적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예맥역사문화권, 중원역사문화권, 뭐 때로는 지역으로 갔다가 또 역사적인 그전의 나라 이름으로 갔다가, 복잡해요. 얽혀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지정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체계를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하여튼……

그 전에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 역사문화권을 포함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하면 그때 봐 가지고 포함시키고 그때그때 큰 원칙과 방향이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정책연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가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중구난방식으로 의원들이 발의하니까 넣고 넣고 넣고 넣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음으로 계류를 하고 차제에 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김윤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윤덕 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의 역사문화권별로 나름대로 큰 틀에서의 구획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분명히 부여되어 있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각 문화권별로 그 지역 자체에서 많은 연구라든가 또 그걸 실증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라든가 진행된 결과물들이 있는 조건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권과 같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더 진전되는데 오히려 또다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기라든가 구획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진행되어 와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런 게 다 정리된 다음에 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 주고 도와주면서 큰 틀에서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구원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로 가는 게 타당하지 일단 스톱시켜 놓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서 후백제의 이번 역사문화권은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런 걸 주요한 우리 청의 과제로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아까 말 취소하고 저 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후백제역사문화권에 전남도 들어 있고 광주도 들어 있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들어 있네요. 그러나 하여튼 말씀 지적 주신 대로 지금 역사문화권이 너무 기준과 원칙이 없이 계속 지정되고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의결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음번부터는 잡아서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덕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이제 문화재청은 오늘 다 했지요.

안형순 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간부들 또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흘러서 오후에 또 전체회의가 있어서 문체부 것은 하여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오후에 어차피 대기……

○**소위원장 이용호** 저는 뭐, 다 의견들이 달라서……

○**이개호 위원** 문화재청은 다 하고 끝내지요?

○**이병훈 위원** 1차관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하다가 가는 게 어떨까요?

○**소위원장 이용호** 그래요? 지금 해서 금방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안 자체가 이게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이병훈 위원** 한 30분이라도 하고……

○**소위원장 이용호** 하여튼 아까 이상현 위원님 법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1월 되기 전에 한번 법안소위를 열어서, 사실 오늘도 원래는 수요일 날 해서 오후에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차관님 참석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져서 오늘 이렇게 급히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이개호 위원** 오늘 할 시간이 없을 텐데.

○**소위원장 이용호** 오늘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예고가 오늘 오전으로 되어 있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전

에만 하는 것으로 다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병훈 위원 우리 문체위에서 너무 태클을 걸지 맙시다.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김윤덕 위원 오늘 너무나 분명해서, 오후 2시에 본회의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험상으로 이렇게, 지금 더구나 더 시끄러운데 사실 무조건 대기할 거거든요, 오후에.

○소위원장 이용호 아니, 그런 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또 해서 다른 각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개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기, 회의 중에는…… 개회가 2시에 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를 못 열게 되어 있어.

○김윤덕 위원 아니, 개회를 앓고 계속 대기했다가……

○소위원장 이용호 하여튼 저희도 문화예술 쪽 법안이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소위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용호 예.

○류호정 위원 이번에 게임법 한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밀려서 다음 번에는 이번에 밀린 법안들을 상위로 해서 순서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병훈 위원 다음에는 게임법을 1안으로 의안 번호를……

○소위원장 이용호 어떤 거요?

○이상현 위원 이 순서를 이어서 계속……

○류호정 위원 이 순서 이어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이것 이어서 하자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용호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기로 예정됐던 것을 다음에 제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다음에 날 잡아서 오전·오후 몰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소위원장 이용호 사실 그렇게 해야지요.

오늘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 승 수	김 윤 덕	류 호 정	유 정 주
이 개 호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용 호
황보승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재청			
차 장 직 무 대 리	안	형	순
문 화 재 정 책 국 장	최	원	일
문 화 재 보 존 국 장	황	권	순
문 화 재 활 용 국 장	채	수	희
법 무 감 사 담 당 관	변	지	현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박	소	영